



국민과 함께 회원과 더불어 『물리치료사가 만들어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수신자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2017년도 신입회원 연수교육 이수 및 홍보 협조 요청의 건

1. 귀 물리치료학과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며, 평소에도 본 협회의 정책과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협회는 졸업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 159차 정기이사회 의결로 「2017년 신입회원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귀 물리치료학과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다소 업무에 바쁘더라도 귀 대학 졸업생들이 물리치료사협회 회원 미등록 및 신입회원 연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신입회원 연수교육 안내문 1부. 끝.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수신처 가야대학교, 가천의과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정보대학,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과학대학, 경북전문대학,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 광주남부대학교, 광주보건대학, 광주여자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 김천대학교, 김해대학,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과학대학, 대구대학교, 대구보건대학, 대구한의대학교, 대불대학교, 대원대학,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신대학교, 동의과학대학, 동의대학교, 동주대학, 마산대학, 목포과학대학,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정보대학, 서남대학교, 선린대학, 선문대학교, 수원여자대학, 순천청암대학, 신구대학, 신라대학교, 신성대학, 안동과학대학, 안산대학교, 여주대학, 연세대학교, 영남이공대학,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 제주한라대학,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춘해보건대학, 충주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성심대학, 한서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산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기안자 교육행정이사 이왕재 교육부회장 김기송 수석부회장 전한수 회장 이태식
 협조자 사무총장 최주환
 시행 대물협(대외)제16-120호 (2016. 12. 29) 접수 (2016. . .)
 우)0470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404호 /http://www.kpta.co.kr
 전화 02-598-6587 FAX 02-598-6589 kpta@kpta.co.kr / 공개

[붙임]

회원 등록 및 신입회원 연수교육 안내문

□ 관련 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4조, 시행규칙 제12조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관리 규정’ 과 ‘회비규정’

□ 배경

- (면허신고제 시행) 2014년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현업에 근무하는 모든 물리치료사의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면허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물리치료사의 면허신고를 반려하고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협회 회원 등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관리 규정’ 에 따라 ‘정회원’ 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본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신입회원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회원 미등록에 따른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면허신고를 협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 미등록으로 인한 비회원의 경우, 보수교육 비용 할인혜택과 관련 정보수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정회원 자격 취득) 협회 ‘회원관리 규정’ 과 ‘회비규정’ 에 따라 회원 등록이 우선 되어야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수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협회 홈페이지 일부 게시판(회원게시판, 구인게시판 등)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면허 종류별로 **설립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시행규칙 <제12조>(실태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장(이하 "각 협회의 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협조 및 안내 사항

○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신고’ 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협회에 회원등록을 통해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에 관한 안내를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부담 최소화)** 졸업 당해 연도는 보수교육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정회원 회비(60,000원)와 보수교육 면제에 따른 교육비(55,000원) 납부가 면제되나, 등록을 유예하였다가 졸업 다음 년도 이후 등록 시는 **신입회원 등록비(65,000원), 미등록회원 교육비(1년당 115,000원)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 신입회원 연수교육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행되며, 입회비 65,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해야 됨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납부 계좌 : 농협 301-0203-0181-11

예금주 :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② 기재할 사항: 이름, 면허번호, 출신대학을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 12345 (물리치료대학)

(신원확인을 위한 복수정보 기재 : 이름만 기재할 경우 동명이인 있을 수 있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면허번호를 모를 경우는 이름, 출신대학을 기재)

□ 신입회원 등록혜택

- 출신 대학교에 장학금 지급(입회 1인당 10,000원)
- 협회 정회원 자격 부여
- 기념품(20,000원 상당), 협회 배지, 명찰 등 지급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구인구직 게시판 등 열람권한 부여
- 보수교육에 수반하는 간접비용(인건비, 사무비, 일반수용비 등)을 제외한 교육비 할인혜택
- 보수교육 일정, 등록기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문의사항

홈페이지 신입회원 연수교육 사항 게시판 참조바랍니다.